

2025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 공고

울산광역시는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장수기업을 발굴 및 지원하여 미래지속형 기업으로 육성하고 모범장수기업 문화 환경을 조성하고자 「2025년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선정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5년 7월 21일

울 산 광 역 시 장

1 선정대상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중소기업 중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
 - 본사 및 주사업장(공장)이 울산에 소재하는 기업
 - 공고일 기준으로 울산에서 20년 이상 운영한 기업
 - 상시고용 10인 이상(최근 3년 평균) 기업
 - 제조업* 및 지식서비스업** 종사 기업
- * 제조업 : 한국표준산업분류표 대분류 기준(분류코드 C)
** 지식서비스업 : 「2025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계획」의 지식서비스업 **【붙임 5】**

< 선정제외 기업 >

- ❖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
- ❖ 직전년도 주요상품(서비스) 전업률이 당해연도 매출액 기준 30% 미만인 기업
 - 전업률 : 손익계산서(재무제표)상의 총 매출액에 대한 제품(서비스) 매출액 비율
- ❖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(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)
- ❖ 임금체불, 법률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❖ 휴·폐업 기업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(지정신청일 현재)
- ❖ 울산광역시 모범장수기업 지정 및 졸업, 취소기업(2021년~2024년) 등

2

신청기간 및 접수

- 신청기간 : 7. 21.(월) ~ 8. 8.(금) 18:00까지 ※ 18:00 도착분까지 유효
- 접수방법 : 방문 제출 또는 전자우편 접수
 - 방문접수 : 울산광역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정책팀(본관 6층)
※ 접수시간은 평일 09:00 ~ 18:00(점심시간 제외)이며, 방문 전 담당자 연락 후 접수 요망. 토·일·공휴일 접수 불가
 - 전자우편 : kotral10@korea.kr ※ 메일 수신여부 확인 필수
- 제출서류* * 접수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포함된 경우 선정 제외
 - 모범장수기업 신청서(서식 1) 1부
 - 모범장수기업 평가자료(서식 2) 1부
 - 회사소개서(서식 3) 1부
 - 첨부서류 ※ [서식 1] 모범장수기업 신청서 하단 참조
- 문 의 처 :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(☎052-229-2796)

3

평가 및 선정

-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: 8월 ~ 9월
- 평가기준 ※ 동점자 발생 시 업력, 건실성, 지역경제기여도 순으로 선발

구분	정량지표(80)					정성지표(20)	
	업력	지역경제 기여도	건실성	혁신성 및 핵심역량	근무 여건	발전 가능성	사회적 가치 실현
총점	25	20	15	10	10	10	10

- ◆ 지역경제 기여도 : 장기고용유지, 사회적 책임 실천
 - ◆ 건 실 성 : 성장성, 수익성, 안정성
 - ◆ 혁 신 성 : 기술개발 투자비율, 기술혁신 노력
 - ◆ 핵심역량 : 핵심 제품·기술 보유, 市 및 정부의 인증 취득 실적
 - ◆ 근무여건 : 직원 복리후생 실천
 - ◆ 발전가능성 : 경영역량, 평판 등 사업의 발전 가능성
 - ◆ 사회적 가치 실현 : 지속 경영을 위한 활동 및 계획
- 최종평가(대면) 및 선정(모범장수기업 인증심의위원회) : 10월 중
 - 시 홈페이지에 선정결과 공고
 - 지정서(현판) 교부 : '25. 11월 중 교부

기관명(부서명)	지 원 시 책
울산광역시 (기업지원과, 세정담당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모범장수기업 인증서 발급 및 현판 교부 ○ 모범장수기업 상표 활용 ○ 모범장수기업 '명예의 전당' 기업 현판 전시 ○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이차보전 금리 0.5% - 자금추천 최대 6억원(1회) ○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(3년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종업원5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세무조사 유예(3년) 적용 ○ 「대·중소기업 구매상담회」 우수제품 전시 우선권 부여
울산광역시 (투자유치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수출기업 지원사업 선정 시 가점부여(5점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울산형 성장단계별 수출패키지 지원 ○ 해외 판로개척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외 유명 전문 전시·박람회 참가 지원(1회 추가)
울산 경제일자리 진흥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선정 시 우대(5점) ○ 지역기업 비대면 판로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(3점) ○ 공공조달제품 경쟁력강화 지원사업 선정 시 우대(5점)
서울SGI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이행(계약, 차액, 선금급, 하자 등) 보증보험료 10% 할인 ○ 최대 30억원 보증한도 확대
한국표준협회 (울산지역본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품질경영대회 참가 시 분임조 활동 컨설팅비(20%) 할인 지원 ○ 한국표준협회 회원가입 우대(입회비 감면, 20만원) ○ 으뜸마크 인증(3점), 로하스 인증(30점) 신청 시 우대
한국기업데이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ESG평가 비용 및 크레탑(CRETOP) 플러스 이용료(30%) 할인 ○ 신용평가 및 기술평가료(35%) 할인 ○ 한국기업데이터 신용관리서비스 및 신용조사(30%) 할인

- 지정 변동 : 지정서 재교부 신청(지정서 원본 첨부) ⇒ 재교부
 - 상호명이 변경되거나, 울산 내에서 소재지가 이전된 경우
 - 사업의 양도·양수로 법인전환, 합병 등의 변경 시(동일성유지)

- 지정 취소 : 해당 구·군 및 해당 기업에 취소사실 통보
 -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
 -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
 - ※ 임금체불, 환경오염 등 사회적 지탄 행위로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은 기업,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등
 -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, 타 시·도 공장이전 기업
 - 업종변경 등으로 처음 지정 신청할 때의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기업

- 종료 기업 : 해당 기업에 인증기간 종료사실 통보
 - 지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업체(지정일 경과 분기 말에 종료)
 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게 된 경우

- 실태조사 : 매년 모범장수기업 선정 업체의 가동 및 운영실태 파악
 - 조사결과 지정 변동 또는 취소 사유 해당 시 조치